비과세종합저축특약

제 1 조 약관의 적용

비과세종합저축(이하 저축이라 한다.)의 거래 시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, 은행이 취급하는 해당 예금의 관련 약관(특약 포함)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제 2 조 가입대상자

이 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 제 1 조의 2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(직전 3 개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 14 조 제 3 항 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 회 이상 2 천만원을 초과한 자를 제외한다)로서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
- 1. 2015 년 1월 1일부터 2015 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: 만 61세 이상인 거주자 2016 년 1월 1일부터 2016 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: 만 62세 이상인 거주자, 2017 년 1월 1일부터 2017 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: 만 63세 이상인 거주자, 2018 년 1월 1일부터 2018 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: 만 64세 이상인 거주자, 2019 년 1월 1일부터 가입하는 경우: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
- 2.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
- 3.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
- 4.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
- 5.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 2조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
- 6. 5·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 4 조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5·18 민주화운동부상자

제 3 조 대상 예금 등

은행이 취급하는 모든 예금 등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은 제외합니다.

제 4 조 예치한도

- ① 이 저축으로 거래하는 모든 예금 등 계좌의 예치한도는 원금을 합하여 1 인당 5 천만원(다만,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5 천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차감한 금액)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- ② 이 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등은 1 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
- ③ 동일한 계좌에서 일부 금액만을 이 저축의 한도로 정할 수 없습니다.

제 5 조 예치한도 산정

- ① 거치식 예금은 거래처가 가입한 예치원금으로 합니다.
- ② 정액(정기)적립식예금은 월 저축금에 계약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.
- ③ 자유적립식예금은 거래처가 사전에 약정한 금액으로 합니다.

제 6 조 예치한도 변경

이 저축의 한도를 증액 또는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합니다.

제 7 조 비과세처리

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합니다.

제 8 조 표시방법

거래처는 신규 가입 시 「비과세종합저축」으로 신청하여야 하며, 은행은 통장표지 출력시 「비과세종합저축」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.

제 9 조 적용이율

① 이 저축으로 가입한 각 예금 등의 적용이율은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
② 거래처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 한하여 당일 해지 시에는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나 익일부터는 중도해지 시 일반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.

제 10 조 상속에 의한 특별중도해지

거래처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 상속인은 은행에 이 저축의 해지를 신청해야 하며 이때 은행은 당초 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.

제 11 조 저축의 전환여부

이 저축과 이 저축이 아닌 예금 등은 상호 전환할 수 없습니다.

제 12 조 중복가입자에 대한 처리

제 11 조에 불구하고 거래처가 여러 금융기관에서 중복하여 가입한 때에는 거래처가 이 저축으로 선택한 계좌 이외의 계좌에 대해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일반과세계좌로 전환하여야 합니다.

제 13 조 명의변경 등

- ① 명의변경 및 양수도는 허용하지 아니합니다.
- ② 다만,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 한하여 명의변경하여 일반과세로 전환한 후 예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

부칙

1. 이 특약은 2020 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

※ 이 특약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케이뱅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